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19 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유용원・임이자・강대식

성일종 • 유상범 • 김형동

한지아 · 신동욱 · 이달희

강선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·홍보 및 자체 R&D,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,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·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 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.

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·홍보 및 자체 R&D 등에 활용하기 위해,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(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·개발하여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2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·개발하여 보유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방위산업지원) ①・② (생	제41조(방위산업지원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
	국방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
	<u>자신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를</u>
	생산하거나 개조・개발하여 이를
	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
	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	<u>한다.</u>
제62조(벌칙)	제62조(벌칙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5
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	
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	
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
	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방산물
	<u>자를 생산하거나 개조·개발</u>
	하여 보유한 자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